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3일  
북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도병두·이인식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북지건설위원회(2025년 6월 2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하고 무차별적인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바, 범죄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현장 도착 시간 단축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와 구민 보호 및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5조제1항제3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 나. 검토의견

###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신속한 순찰 업무를 위해 경찰 순찰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제3호)

###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순찰업무에 보다 신속한 대응에 임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신설 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